

-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36호

다. 제출일자 : 2018. 8. 16.

라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## 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2조의2)
-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제명을 정비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재정관리담당관(재정계획심의위원회) : 원안가결

(2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3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없음

(4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완료

(5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6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평가제외

(7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
라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8. 7. 5. ~ 2018. 7.25.

○ 제출의견 :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”토록 한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에 따라

교통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이라 한다)의 존속기한을 “2023년 12월 31일까지”로 연장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『지방재정법』 관련 규정(2014.5.28.)

제9조(회계의 구분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

-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등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해 『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』 제49조1) 및 『주차장법』 제21조의22)에 따

라 1992년 10월 『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』 3)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

- 동 조례 제정 당시부터 동 회계에 대한 별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4년 5월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개정 내용에 따라 동 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바,

동 조례 개정을 통해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- 동 회계 예산은 '18년 기준 1조 3,445억원 규모로 4개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각 계정별로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,4)[별첨 참고]

각 계정별로 혼잡통행료 시행, 교통안전 시설 투자, 주차장 확보, 광역교통개선사업 시행 및 교통방송의 효율적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·운용되고 있음

---

1) 제49조(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)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④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2) 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정(計定)은 분리하여야 한다.

3) 제정 당시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“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” 2개 계정으로 분리·운영되었으나 현재는 “교통관리계정, 주차관리계정, 교통개선분담금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” 등 4개 계정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

4) 동 조례 제6조(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~제9조(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)

-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사업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한편, 동 조례 제명 변경은 법제처에서 정한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
### [별 첨] 교통사업특별회계 각 계정별 세입·세출 항목

구분	교통관리계정	주차장관리계정	교통개선분담금계정	교통방송운영계정
세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</li> <li>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에 따른 과징금</li> <li>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94조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</li> <li>4.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징수분</li> <li>5.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</li> <li>6. 국고보조금</li> <li>7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li> <li>8. 「교통안전법」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</li> <li>9.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</li> <li>10. 그 밖의 수입금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</li> <li>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li> <li>3. 국고보조금</li> <li>4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</li> <li>5.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</li> <li>6. 주차관련 수입금</li> </ol>	<p>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등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광고방송 수입</li> <li>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li> <li>3.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융자금</li> <li>4. 기채(기채: 공채모집) 및 차입금</li> <li>5. 교통방송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수익금</li> <li>6. 방송사업의 수입</li> <li>7.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</li> </ol>
세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</li> <li>2.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업</li> <li>3.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</li> <li>4.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폐차(대폐차: 차량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)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보조 및 융자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제4항 각 호의 사항</li> <li>5.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</li> <li>6.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영주차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</li> <li>2.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</li> <li>3. 노외주차장·부설주차장을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·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</li> <li>4. 주차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</li> <li>5. 제1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</li> </ol>	<p>광역교통개선사업의 시행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의 해당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통방송의 운영</li> <li>2. 방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</li> <li>3. 교통방송 및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·행사의 수행 및 지원</li> <li>4. 방송제작과 방송제작에 필요한 전속단체 및 통신원 등의 운영·관리 및 육성</li> <li>5. 기채·차입금 및 융자금의 상환</li> <li>6. 방송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개발</li> <li>7.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사업</li> <li>8. 그 밖에 교통방송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